

				처 장
기 안	법제교류 협력담당관	기획조정관	차 장	김려현
이기재	김남연	김태홍	이근남	
협 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주채원			

법제처장 프랑스 방문결과 보고

2019. 10.



법제처

기 획 조 정 관 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목 차

1. 방문 개요	1
2. 프랑스 내각사무처 방문	3
3. 주 프랑스 대사 면담 및 만찬	12
4. 프랑스 국사원[콩세이데따] 방문	14
5. 방문 성과 및 향후 계획	23
별첨 1. 프랑스 약황 및 개황	24
별첨 2. 면담자 프로필	38
별첨 3. 처장님 말씀자료(안)	31
별첨 4. 기념품	41

1 방문 개요

1. 일정: 9.18.(수) ~ 21.(토) [2박 4일]

2. 방문 국가: 프랑스 (파리)

3. 출장단: 총 5명

연번	성명	직위
1	김형연	법제처장
2	김형수	기획조정관
3	김남연	법제교류협력담당관
4	이기재	사무관
5	문병주	주무관(수행비서)

4. 일자별 주요 공식 일정

날짜	시간	주요 일정	비고
1일차 9.18.(수)	13:20 (한국시각)	• 한국(인천) 출발	시차 -7h, KE901
	18:30 (현지시각)	• 파리(샤를 드골) 도착	
2일차 9.19.(목)	오전	• 방문 사전 준비	
	오찬	• 방문단 자체 해결	
	오후	• 프랑스 내각사무처 방문(14:30-17:00)	
	만찬	•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만찬	
3일차 9.20.(금)	오전	• 공세이데따 방문(11:00~13:00)	
	오찬	• 방문단 자체 해결	
	오후	• 방문 내용 정리	
	만찬	• 생략	
	21:00 (현지시각)	• 파리(샤를 드골) 출발	귀빈실 이용
4일차 9.21.(토)	15:00 (한국시각)	• 한국(인천) 도착 (+1일)	KE902

1. 면담 개요

- 일시/장소 : 9. 29. (목) 14:30-16:30 / 연방정부 사무소(내각사무처)
- 참석자
 - 법제처(5명): 법제처장, 김형수 기획조정관, 김남연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정차영 서기관(주 프랑스 대사관), 이기재 사무관
 - 내각사무처(5명): 마크 기욤 내각사무처 사무처장, 비서관(2명), 내각사무처 법제실장

2. 면담 내용

□ 인사말씀 및 법제처 업무 소개 · 질의응답

- (처장님)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정부입법에 대해 의견 대립 시 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법령 심사를 통해 법령안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법령 해석 업무를 수행함
-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 법령정보를 관리하고,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발굴하여 법령 소관 부처에 법령정비를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함
- (프랑스) 법제처 업무에 대한 내각사무처장 질의
 - 법령안의 초안은 소관 부처가 작성하는지 여부 (소관 부처가 작성)
 - 법제처 직원은 판사, 변호사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구성되는지 여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도 있으나 모두는 이님)
 - 정권 변경 시 법제처장 변경 여부 (일반적으로 그러함)

□ 프랑스 내각사무처 업무 소개 등

- (프랑스) 프랑스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을 통해 법률상의 기관이 아님에도 유지되고 있음
 - 기관의 중립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임
 - 프랑스의 경우에도 법령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각종 사회 단체의 자문 요청으로 인해 자문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처장님) 프랑스 국사원의 자문 내용과 다르게 법령안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질의
- (프랑스) 약 95퍼센트 정도 국사원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 통과됨. 다만, 국사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은 의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음

□ 프랑스 내각 회의 및 이와 관련된 내각사무처 업무 소개

- (프랑스) 프랑스의 내각 회의(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되고 있으며, 이 회의는 제5공화국 1958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유서 깊은 회의임
 - 내각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며 주재를 거의 위임하지 않음
 - 해당 회의에서 대통령은 각료들과 토론하나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음
- (프랑스) 1958년 전에는 정부가 지나치게 불안정했고, 내각 회의에서도 의견 대립이 심한 편이었음
 - 극단적인 사례로 단 몇 주 만에 정부가 해산된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불안정성은 1958년 드골의 개헌의 동기 중 하나이기도 했음
 - 1958년 개헌은 정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드골의 개헌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내각 회의가 보다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운영되게 되었음

-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약 36개의 기관(부처)로 이루어지며, 약 스무 명 정도의 장관이 있고, 우리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약 12명 정도 존재하여 장관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장관 대신 비서실장이 참석함
- **(프랑스)** 프랑스 내각 회의는 기밀 유지가 매우 중요시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 회의의 토론 내용 등은 모두 기밀임
 - 회의 시작 전 해당 회의에서 논의된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회의 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할 시간을 부여하여 회의 내용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함
- **(프랑스)** 회의는 다음 단계에 따라 나누어서 진행됨
 - 1단계(A단계)에서는 회의에 부의된 안건들의 제안 설명이 이루어지며, 해당 안건들은 이미 내각사무처의 조정이 이루어진 안건들임
 - 2단계(B단계)에서는 각종 공공기관장 등 임명안에 대해 다루며, 이 안건들도 이미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안건들임. 다수 후보가 있을 경우 프로필 등을 보여주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침
 - 3단계(C단계)에서는 각종 개혁안, 계획, 정책(여성평등정책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짐
 - 4단계(D단계)에서는 각 부처의 새로운 정책이 가져온 파급효과, 진행 경과, 국민들의 체감 정도, 기대효과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발표는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임
 - 5단계(E단계)에서는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며, 회의 전체적으로 약 3시간이 소요됨
- **(프랑스)** 내각사무처는 회의 종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는 기밀임
 -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해 따로 논의하기도 함
- **(프랑스)** 내각사무처는 여기 이 회의실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다음

- 주 회의에 올릴 안건을 결정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월요일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수요일에 회의에 부의됨
- 내각 회의 상정 안건은 한 달 내지 몇 달 전부터 상정 여부를 논의하며, 각 회의에서 심의된 법률안들은 의회로 송부됨

□ 내각사무처의 법제 관련 업무 소개

※ 장소 이동 후 법제실장이 관련 업무 소개

- **(프랑스)** 내각사무처 법제실은 내각 회의를 거친 법률안을 의회에 송부하는 등 법령안에 대한 업무를 총괄함
 - 법령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법령안의 공포를 준비하며, 관보 게재 등의 업무도 수행하나,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에만 관여함
- **(프랑스)** 법제실은 법령안의 형식적 검토와 정책적 문제의 확인 업무를 처리하며, 이러한 검토 과정은 전산화되어 있음
 - 이는 적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법제 업무 절차의 중요한 과정이며,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보고하고 법령안이 제때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함
- **(프랑스)** 법제실은 법안 개정 시 이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법령 교육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레지프랑스(legifrance.fr) 사이트(법령정보시스템)의 관리 업무도 담당함
- **(처장님)** 내각 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제실은 직접 보고내용을 작성하는지 여부와 국사원의 자문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 내각사무처의 역할 문의
 - **(프랑스)** 각 부처에서 보고내용의 초안을 작성하며, 국사원의 자문 의견은 헌법 또는 법률합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정책적 판단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 행정기본법 관련 논의

- (처장님) 대한민국에는 약 4천여개의 행정법령이 있고, 각 분야의 일반법은 존재하나 이를 관통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음
 - 또한 어려운 행정법령과 법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개별 법령에서 동일한 용어가 반복되는 경우 개별 법령의 조문이 많아져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에 빠지기 쉬운 문제가 있음
- (처장님)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법령 전체를 관통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프랑스에서 행정부와 일반 국민과의 관계법(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우리의 행정절차법과 유사함, 2016년 제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법령을 확장하여 행정기본법에 해당하는 법을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드림
- (프랑스) 해당 법(Code)은 국민과 행정부와의 관계 및 행정절차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행정관계의 다양한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응답 - 자치법규 관련

- (김형수 기획조정관) 대한민국은 빠른 시간 동안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제도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됨
 -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 국가 법령과의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 주

고 있는데, 내각사무처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관여하거나 자문해 주는 등의 제도가 있는지 질문드릴

- (프랑스) 프랑스의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중앙부처의 인력이 자치법규를 같이 심의하나, 내각사무처의 인력은 아니며, 프랑스는 자치법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후에 개입하는 형태를 취함

3. 프랑스 내각사무처 소개

(Le 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 : S.G.G.)

(1) 개요

- 수상 직속 비정치적 행정조직
- 내각사무처장은 차관급이며 수상이 임명, 내각의 구성원으로 활동
- 사무처장은 정권교체에 연동하여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6년 내지 10년간 계속하여 재직
- 프랑스의 정부조직 상호간의 조정업무 수행

(2) 업무

① 내각 회의 안건 준비

②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 각종 법적 검토가 필요한 업무 총괄

- 법제 업무의 핵심 역할을 수행 - 정부와 의회, 정부와 콩세이데따간의 연락 및 법률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등의 개정 업무 등
- 정부 업무에 대한 법적 자문(콩세이데따 자문 前 단계) 및 헌법위원회 관련 업무

③ 법률 및 규제 본문의 인터넷(레지프랑스, Lesifrance.gouv.go.fr,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유사) 등재 및 관리

④ 정권 교체 시 정권 인수 작업

⑤ 총리실 업무의 감독

⑥ 의회의 정부에 대한 각종 질의, 정부의 보고 등에 대한 정부 대응
총괄(정부에서 의회로 보내는 문서는 내각사무처를 거쳐야 함)

(3) 주요 조직

① 내각사무처 내 사무국 (Office of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Government)

② 자문국 (Advisers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Government)

③ 국가분권조정위원회 (의역, National coordinator of the reform of the
decentralized services of the State)

④ 총리실 (Mission to organize the services of the Prime Minister)

⑤ 국립문서보관소 (Mission of the National Archives)

⑥ 경제문제담당관 (의역, Economic center and project managers)

⑦ 윤리위원회 (의역, Referent ethics officer of the central services of the Prime
Minister)

⑧ 법제실 (department로 번역, 실국에 해당, Department of Legislation and the
Quality of Law)

⑨ 문서실 (Documentation Service of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Government)

※ 법제실은 심의된 법령안이나 행정안건을 공세이데따에 회부하는 업무와 문서 연
락과 사후처리, 법령 등의 내각 상정, 국회제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법령 등의 형식, 체제 및 유관기관간의 협조상황 등에 관한 형식적 심사와 입법
시기 등 제반사항에 관한 행정적 조정 등 법제도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법제실 내부에 ① 의회 담당 부서, ② 법제 절차 담당 부서, ③ 명령
담당 부서가 존재한다.

문서실은 관보에 공포될 법령 및 법전의 편찬과 관보의 정정에 관한 사항, 각종
법령의 분류별 카드화작업과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문서실에는 법령
담당 부서와 문서 담당 부서가 존재한다.

4. 방문사진





3 주 프랑스 한국 대사 면담

1. 면담 개요

- 일시/장소 : 9. 19. (목) 18:30 /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저
- 참석자
 - 법제처(5명): 법제처장, 김형수 기획조정관, 김남연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이기재 사무관, 문병주 주무관
 - 대사관 측(3명): 최종문 주 프랑스 한국 대사, 서빈 참사관, 정차영 서기관

2. 논의 내용

- 프랑스 최근 정세 전달 및 법제처의 국제협력 관련 논의
 -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최종문 대사의 ODA사업 관련 조언 청취

3. 방문사진





1. 면담 개요

- 일시/장소 : 9. 20. (금) 11:00-13:00 / 팔레 루아얄(국사원 건물)
- 참석자
 - 법제처(5명): 법제처장, 김형수 기획조정관, 김남연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정차영 서기관(주 프랑스 대사관), 이기재 사무관
 - 국사원(5명): 브루노 라세르(Bruno Lasserre) 부원장, 국사원 연구보고국장(Martine de Boisdeffre), 크리스틴 모게(Christine Maugué) 제7재판부장, 토마스 페즈(Thomas PEZ-LAVERGNE) 판사, 이베스 구닌(Yves Gounin) 국제협력과장

2. 면담 내용

□ 부원장 인사말씀 및 국사원 업무 소개

- (프랑스) 법제처장님을 환영하며, 지난 6월 크리스틴 모게 판사가 대한민국 방문 후 작성한 보고서는 매우 흥미로웠음
- (프랑스) 국사원의 4가지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 국사원은 ① 최고 행정법원이고, ② 정부입법 시 해당 안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③ 정부의 자문 요청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고, ④ 각종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를 제의함
 - 특히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1심 재판소가 지방에 많이 있어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문과 재판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은 장점임
 - 다만, 자신이 자문을 했던 사안에 대해 재판을 담당할 수는 없음 (불편부당성의 원리)

□ 처장님 인사말씀 및 법제처 업무 소개 · 질의응답

- (처장님) 부원장님의 환영에 감사드리며, 법제처 업무를 소개하겠습니다
 -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통지하며, 해당 입법계획을 모니터링하며 관리함
 - 정부부처 간 법령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사전에 입안 관련 자문을 제공함
 - 그리고 법령안 심사와 법령해석 업무를 수행하며, 문제가 있는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법령 정비와 법제 교육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프랑스) 법제처 업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법령심사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이 국회에 통지되는지 여부

(처장님) 법제처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 최종안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국사원처럼 별도의 자문안을 주는 형식이 아님

 - 정부입법계획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률안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와 법령안 심사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여부
- (처장님) 부처마다 필요한 숫자를 정해서 통보하고 제출할 수 있는 법률안의 숫자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 개정 소요되는 전 기간은 6개월 정도임
- 법제처는 법령안의 제 · 개정에 따른 비용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자문(심사)하는지 여부
- (처장님) 법제처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하나, 특정 집단에 대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법령안에 반영된다면 이것은 평등의 원칙 문제가 될 수 있어 정책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법적 문제에 해당하므로 심사가 가능할 것임

□ 처장님의 국사원 업무 관련 질의응답

- (처장님) 국사원이 최근 의회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대한 자문은 수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함
- (프랑스) 의회 자문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으며, 의회에 대한 자문은 단순한 의견 제시임
 - 2017년 이후 의회 자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통 정책적인 분야임
 - 의회 자문 시에는 의원들이 직접 안을 들고 와서 국사원과 토론하며, 이러한 토론 자체는 인정을 받음(최근 9건 정도 처리함)
- (처장님) 국사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신뢰보호의 원칙 같은 헌법적 원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들에 대해 국사원이 발표한 것이 있는지 여부
- (프랑스) 이는 판례이며, 성문법적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국사원은 판례와 심사를 통해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준수함
 - 프랑스의 법령은 영국과 달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편이므로 판례법적 성격은 덜함

□ 행정기본법 관련 논의

- (처장님) 법령이 복잡하여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혼선을 빚기도 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개별 처분을 바로 수용하기 어려워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문화되지 않은 원칙들을 법령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프랑스) 프랑스는 헌법의 역사가 길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넓은 편임
 - 특히,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 행정 분야의 일반법들이 각 분야의 행정법령들을 잘 규율하고 있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종전의 법을 잘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 (처장님) 대한민국 헌법은 추상적인 편이므로 행정의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법제처에서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게 되면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 협력 관련 논의

- (프랑스) 법제처와 국사원 간 기관 교류·협력을 제시함
 - 프랑스어를 잘 하는 법제처 직원이 이곳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
- (법제처) 해당 협력 제시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3. 국사원(Conseil d'État) 소개

(1) 기본 소개

- 독립된 자문기구이며 최고행정법원
- 콩세이데따의 원장은 프랑스 총리이나 이는 형식적인 개념이며, 실질적으로는 부원장이 콩세이데따 내 기관장에 해당한다.
- 핵심 업무는 자문 업무(정부의 법령 개정 시 수행하는 필수 자문 업무와 정부·국회 요청 시 수행하는 임의 자문 업무로 구분)와 행정법원으로서의 재판 업무(행정재판을 사법부가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

(2)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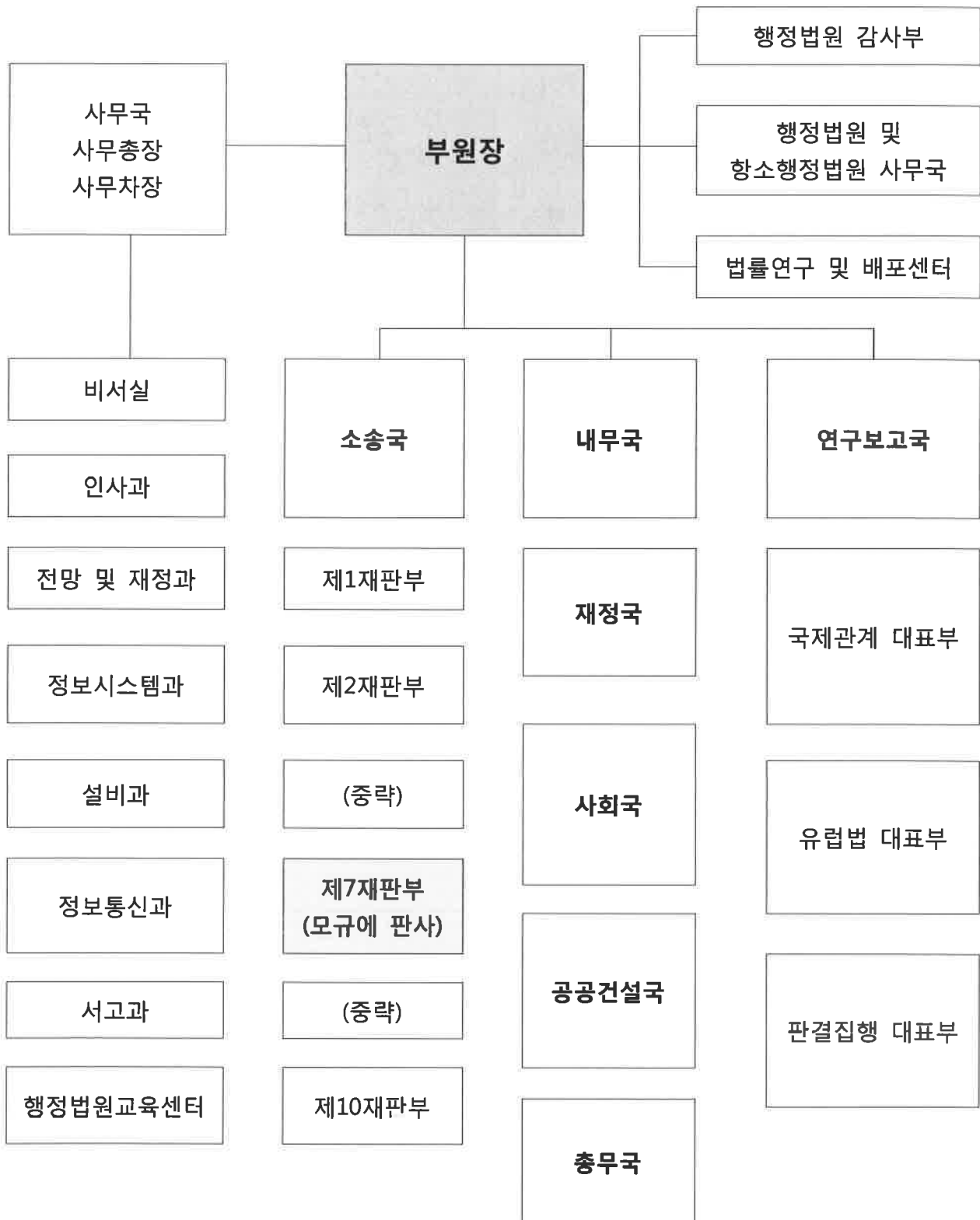
- (소송)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소송국과 소송국 내 재판부
- (자문) 정부부처에 대응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5개 국
(내무국 / 재정국 / 사회국 / 공공건설국 / 총무(보훈담당)국)
- (그 밖의 부서) 연구 및 보고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보고국,
각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

(3) 구성원

콩세이데따는 약 300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콩세이데따는 매년 국립행정학교(에콜, ENA) 졸업생을 “방청관”(auditeur, 초급 사무관)으로 채용한다. 방청관은 4년 근무 후, “조사관”(maître des requêtes, 담당관)으로 승진하고, 12년 후에는 “최고위원”(conseiller d'État)이 된다.

또한, 조사관의 4분의 1, 최고위원의 3분의 1을 외부 임용 방식으로 채용한다. 이러한 외부 임용 방식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행정법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다수이다.

<공세이데따 조직도>



4. 방문사진





5. 국사원 측 보도자료

2019. 10. 7.

Visite d'une délégation de la République de Corée



Relations internationales 20 septembre 2019

Visite d'une délégation de la République de Corée

Palais-Royal

Le 20 septembre 2019, le Vice-président Bruno Lasserre a reçu au Conseil d'Etat le ministre de la Législation gouvernemental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Kim Hyung-yun.

Le Conseil d'Etat poursuit ainsi ses relations bilatérales avec la République de Corée. Cette visite fait suite à la conférence internationale sur la légistique organisée par l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LRI) en juin dernier à laquelle avaient participé deux membres du Conseil d'Etat.

Les fonctions du ministère de la législation recoupent en partie celles du Conseil d'Etat. Parmi ses attributions, il coordonne le processus de rédaction des projets de loi et de décrets entre les ministères et il offre son soutien aux ministères et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our rédiger des projets de loi, de décrets ou d'arrêtés.

- * 브루노 라세르 부원장이 법제처 방문단을 면담했다는 내용, 지난 6월 국사원 방문단이 법제연구원(KLRI)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법제처장을 면담했다는 내용 및 법제처의 업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

□ 방문 성과

○ 프랑스 내각사무처 방문

- 프랑스 내각사무처장에게 법제처 업무 소개를 통해 상호 업무가 유사함을 확인하고 상호 교류·협력 방안 논의
- 내각사무처장에게 법제처 소개 및 행정기본법 관련 논의

○ 프랑스 국사원 방문

- 지난 6월, 프랑스 국사원의 크리스틴 모게 판사의 대한민국 방문(컨퍼런스 참석 및 법제처장 면담)에 이어 법제처장 국사원 방문을 통해 국사원 측의 법제처에 대한 관심 환기
- 국사원 부원장에게 법제처 소개 및 행정기본법 관련 논의
- 국사원 측과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인사교류 논의

□ 향후 계획

○ 국사원 측이 제시한 단기 교육 등 교류 논의

- 국사원 측이 제시한 조건에 대하여 국사원 측 실무자와 실무협의를 통해 내용 확정 후 '20년 이후 추진

* 해당 내용 별도보고

별첨 1 프랑스 약황 및 개황

프랑스 약황

□ 일반사항

- 국명 : 프랑스공화국(La République Française)
- 수도 : 파리(Paris)
- 면적 : 675,417km²(속령포함)(한반도의 3.1배)
- 인구 : 6,718만 명('18.1월)
- 종교 : 가톨릭, 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 교육 : 의무교육 6-16세

□ 정치 현황

- 국가형태 : 공화국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 혼합
- 의회구성
 - 상원 : 348석
 - 하원 : 577석
 - ※ 하원구성(교섭단체)('18.5월)
- 전진하는 공화국 : 312석 / 공화당 : 102석
- 민주운동당 : 47석 / 건설주의 : 32석
- 새로운 좌파 : 30석 /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 17석 / 민주 및 공화 좌파 : 16석
- 무소속 : 21석
- 주요인사 성명
 - 대통령 :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 총리 : 에두아르 필립(Edouard PHILIPPE)
 - 외교장관 : 장-이브 르 드리앙(Jean-Yves LE DRIAN)

□ 경제 현황

- 주요경제지표
 - GDP('18년) : 2조 7,616억불
 - 1인당 GDP('18년) : 42,472불
 - GDP 성장률('18년) : 1.6%
 - 실업률('18년) : 9.1%
- 교역('18년)
 - 수출 : 4,916억유로
 - 수입 : 5,515억유로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불우호통상조약 체결 : 1886.6.4
- 상호 국가승인 : 1949.2.15
 - 주불대사 : 최종문 대사('18.1.9~)
 - ※ '18.8.31. 신임장 제정
 - 주한대사 : Fabien Penone('15.9.6.~)
 - ※ '15.9.14. 신임장 제정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18년)
 - 수출 : 35.4억불(자동차, 축전지, 우주선, 합성수지 등)
 - 수입 : 58.7억불(화장품, 의약품, 가방 등)
- 투자현황('18년 누계, 신고기준)
 - 대불 : 1,025건, 29.37억불
 - 대한 : 1,119건, 84.24억불
- 최근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00.3 김대중 대통령(국빈방문)
 - '00.10 시라크(Chirac) 대통령

- '01.12 김대중 대통령
- '04.12 노무현 대통령(공식방문)
- '06.6 한명숙 총리(공식방문)
- '10.11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
- '11.5 이명박 대통령(공식방문)
- '11.5 김황식 총리
- '11.9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 '11.10 피용(Fillon) 총리
- '11.11 이명박 대통령
- '12.3 김황식 총리
- '12.3 피용(Fillon) 총리
- '13.3 펠르렝(Pellerin) 중소기업/IT/혁신장관
- '13.7 에호(Ayrault) 총리(공식방문)
- '13.11 박근혜 대통령(공식방문)
- '14.11 마크롱(Macron) 경제산업디지털장관
- '15.7 윤병세 외교부장관
- '15.9 황교안 총리(공식방문)
- '15.10 펠르렝(Pellerin) 문화통신부장관
- '15.11 올랑드(Hollande) 대통령(국빈방문)
- '15.11 박근혜 대통령(COP21)
- '16.3 에호(Ayrault) 외교·국제개발부장관
- '16.5 플라세(Placé) 국가개혁국무장관
- '16.6 박근혜 대통령(국빈방문)
- '16.6 한민구 국방장관
- '16.8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6.11 플라세(Placé) 국가개혁국무장관
- '17.3 플라세(Placé) 국가개혁국무장관
- '17.9 그리보(Griveaux) 경제재정국무장관
- '17.10 강경화 외교부장관
- '17.11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 '18.2 르 드리앙(Le Drian) 외교부장관,
- 플레셀(Flessel) 스포츠장관
- '18.3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8.3 플레셀(Flessel) 스포츠장관
- '18.3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 '18.3 클뤼젤(Cluzel) 장애인담당국무장관
- '18.10 문재인 대통령(국빈방문)
- '18.11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 '19.2 마주비(Mahjoubi) 디지털 국무장관
- '19.5 파니에-뤼나셰(Pannier-Runacher) 경제재정부 국무장관
- '19.5 강경화 외교부장관
- '19.6 박양우 문체부장관

- 재불한인 총수('18년) : 약16,251명

□ 북한과의 관계(미수교)

- 1976.11 북한, 주유네스코대표부 설치
- 1984.12 북한 일반대표부 설치
- 1991.2 일반대표부에서 주유네스코대표부 흡수
 - 현 김용일 유네스코 대사 겸 일반대표부 대표('14.6월-)
- 2011.10 프랑스, 주북한 문화인도지원 협력사무소 개설
- 교역('17년, GIA 기준)
 - 대북 수입 : 28만 달러
 - 대북 수출 : 199만 달러

프랑스 개관

가. 일반

국 명	프랑스 (La République française, The French Republic)
영 토	본토(Métropole), 해외 영토(Outre-Mer)
수 도	파리(서울의 1/6)
면 적	675,417km ² (해외 영토 포함, 한반도의 3.1배)
기 후	대부분의 지역이 서안 해양성 기후이나, 동부 지역은 대륙성 기후, 남부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행정구역	Région(18개), Département(101개), Commune(35,357개)
인 구	6,718만 명 (2018.1.1 기준) 파리 및 수도권 인구 : 1,208만 명 (파리 222만 명)
종 교	헌법상 세속주의 / 기독교(가톨릭·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언 어	프랑스어
민족 구성	켈트족·프랑크족 등
교 육	중·고등학교(6~16세)까지 의무교육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우리나라와의 시차	우리나라보다 8시간 느림 (서머타임 7시간)
언 론	신문 : Le Figaro, Le Monde, Libération, Le Parisien 등 방송 : TF1(민영), France2(공영), Arte, M6, Canal Plus 등 통신 : AFP

나. 정 치

정치 체제	공화국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혼합형
국가원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2017.5월 당선, 임기 5년)
총 리	에두아르 필립(Edouard Philippe)
의 회	양원제 • 상원 : 348명 (간선, 임기 6년) • 하원 : 577명 (직선, 임기 5년)
외교장관	장-이브 르 드리앙(Jean-Yves Le Drian)
주요 정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 공화당(Les Républicains), 사회당(PS),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France Insoumise),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등
국경일	7월 14일(1789년 대혁명 당시 바스티유 감옥 습격일)
헌 법	1958.9.28 채택, 같은 해 10.4 발효

다. 경 제(2017)

국내총생산(GDP)	총 GDP : 2조 5,836억 달러(잠정), 1인당 GDP : 39,869달러
1인당 GDP	38,128달러
교역 규모	수출 : 5,350억 달러, 수입 6,240억 달러
GDP 성장률	2.3%
실업률 (청년실업률)	9.4% (22.3%)
물가상승률	2%
화폐 단위	유로(Euro)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 관계	• 1886년 6월 4일 한·불 우호통상조약 체결로 외교 관계 수립 • 을사조약 체결로 1905년 외교 관계 중단 • 1949년 2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재수교
교역 현황 (2017 우리 기준)	• 수출 29.7억 달러 (승용차, 축전지, 석유제품 등) • 수입 57.5억 달러 (화장품, 의약품, 가방, 원동기 등)
투자 현황 (2017년 누계)	• 對한국 투자 : 77.4억 달러 • 對프랑스 투자 : 25.3억 달러
최근 정상 교류	•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 (국빈 방문) • 2000년 10월 자크 시락(Jacques Chirac) 대통령 (ASEM 계기) •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공식 방문) • 2010년 11월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 (G20 계기) • 2011년 5월 이명박 대통령 (공식 방문) •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G20 계기) •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공식 방문) • 2015년 11월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 (국빈방한, 한·불 상호 교류의 해 계기) • 2015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COP21 계기) • 2016년 6월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문)
재불 한인 수	• 약 16,000명 (2017)
프랑스-북한 관계	• 미수교 - 1968년 9월 주불 북한 민간무역대표부 설치 - 1976년 6월 주불 북한 민간무역대표부를 통상대표부로 격상 - 1976년 11월 주불 UNESCO 대표부 설치 - 1984년 12월 주불 북한 통상대표부를 일반대표부로 격상 - 1991년 2월 주불 일반대표부와 UNESCO 대표부 통합 - 2011년 10월 주북 프랑스 협력사무소 개설

별첨 2 면담자 프로필

1. 내각사무처장



○ 이름: 마크 기욤(Marc Guillaume)

○ 출생년도: 1961년 출생, 58세

○ 학력

1989년 파리 정치학 연구소(the Paris Institute of Political Studies)

1991년 국립행정학교(École nationale d 'administration) 졸업

○ 경력

2015. 3. - 내각사무처장

2007. - 2015. 헌법위원회 사무총장

1997. - 2007. 법무부 과장(파견)

1996. - 1997. 국방부 과장(파견)

1991. 콩세이데따 근무 시작

2.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



○ 이름: 최 종 문 (崔 鍾 文)

○ 출생일: 1959. 4. 23.

○ 학력: 1982. 2.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

○ 경력

1983. 6.	외무부 입부 (83.4. 제17회 외무고시)
1989. 1.	주유엔2등서기관
1995. 12.	주태국1등서기관
1999. 3.	대통령비서실 파견
2000. 8.	서남아대양주과장
2001. 1.	장관비서관
2002. 1.	주미국참사관
2004. 12.	주미얀마공사참사관
2007. 3.	대통령비서실 파견
2008. 3.	조정기획관
2009. 1.	남아시아태평양국장
2011. 3.	주스리랑카대사
2014. 4.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2015. 3.	장관특별보좌관 겸 유네스코협력대표
2015. 11.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2016. 3.	다자외교조정관
2018. 1.	주프랑스 대사

3. 국사원 부원장



- 이름: 브루노 라세르 (Bruno Lasserre)
- 나이: 1954년 출생, 65세
- 고향 및 종교: 보르도, 카톨릭 가문

○ 학력

1975. 국립행정학교(National School of administration) 입학

1978. 국립행정학교 졸업

○ 주요 경력

2018. 5. - **퐁세이데따 부원장** (마크롱 대통령 임명)

2017. 4. - 에너지규제위원회 위원장

2012. -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부회장

2007. - 프랑스 해방 및 성장 위원회 위원

2004. 경쟁위원회 위원장

2003. - 2004. 분쟁재판소 재판관

1998. 퐁세이데따 복귀 (소송국 부국장)

1989. - 1997. 정보통신부 과장 근무 (정부부처 파견)

1978. 국립행정학교 졸업 및 퐁세이데따 재판소 근무 시작

별첨 3 처장님 말씀자료

프랑스 내각사무처 면담 말씀자료

□ 인사말씀

- 바쁘신 중에도 법제처 방문단을 환영해 주신 마크 기욤 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먼저 저희 방문단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김형수 기획조정관(국장급, Director General)입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김남연 법제교류협력담당관(과장급, Director)입니다.

□ 법제처 소개 및 법제교류사업

- 법제처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부입법 총괄)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입니다.
- (법제) 법제처는 행정부가 제출한 법령안을 심사하여 위헌·위법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현행 법령체계의 조화와 통일성을 유지하는 법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석) 또한, 법령의 의미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행정부 내의 최고 유권해석기관으로 법령의 의미를 해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해석 업무는 행정재판과는 다른 업무로, 행정부 내부에서의 최종 해석이며, 행정재판은 사법부에서 담당합니다.
- (법제업무 절차 총괄) 그리고, 법령의 심사 후 국무회의 상정과 확정된 법령의 법령정보시스템 등록 및 법령정보시스템 관리 업무를 통해 법령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각사무처에서도 정부 부처와 풍세이데따 간의 연락 업무와 법령

의 내각 상정, 국회 제출 및 공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령 정비) 그 외에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법령에 공통적인 차별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 법제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 후 법령 소관 부처에 정비를 권고하는 등 정비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외국기관 교류) 마지막으로, 외국 법제기관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현재 17개국 27개 해외 법제기관들과 양해각서 및 워크플랜을 체결하여 협력 중입니다. 특히,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을 전수하고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설치해 주는 등 외국과의 교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내각사무처의 업무에 관한 질의응답 관련 참고자료

- (행정기본법제) 법제처는 올해 특별히 행정 분야 법령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Enactment of General Administrative Law)을 제정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법률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는 약 4천개의 개별 행정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행정법들 중 분야별로 일반법에 해당하는 법률(국가배상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법 전체를 아우르는 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 분야별 일반법 등 법률 간의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용어가 통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 국민들이 특히 행정법을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제처가 정부 내 입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행정법 전체의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퐁세이데따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불문법(不文法)의 역할을 하고, 행정부와 일반 국민과의 관계법(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행정절차법과 유사함)이 201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각사무처에서 해당 법령을 관할하고 계시는지 여부와, 해당 법(code) 외에 추가로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법을 제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 (전자정부) 프랑스도 전자정부(e-government)화가 매우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간 업무처리와 행정부와 의회 및 퐁세이데따 등의 기관 간 업무도 모두 시스템으로 문서가 처리되는지 등 전자정부화 관련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부처 간 문서를 주고받는 것을 모두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부처에서 각각 사용하던 시스템을 모두 연결하였습니다. 법령을 담당하는 개별 부처에서 법령 개정안의 초안을 만들어 시스템에 등록하고, 법제처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심사 후 국무회의에 보내며,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 게재 및 시스템 등록에 등록하는 절차와 관련된 시스템이 몇 년 전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 (프랑스 법령정보시스템) 프랑스의 법령정보시스템인 **레지프랑스(Legifrance)**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레지프랑스 사이트는 내각사무처 문서실(Documentation Service of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Government)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도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개발하여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 이러한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회가 되면, 대한민국이 개발한 법령정보시스템과 각종 법제 관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는 한편, 프랑스의 레지프랑스 프로그램과 서로 장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 프랑스의 법령정보시스템 (<http://legifrance.gouv.fr>) 화면



- (내각사무처, 정부 내부에서의 법령 해석) 내각사무처는 쾅세이데따와의 관계에서 정부 측을 대변하여 법령심사와 해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내용과 쾅세이데따에서의 기준이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 (쾅세이데따 검토 의견 관련) 또한, 쾅세이데따의 검토 의견을 정부에서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정부에서 다르게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실제 업무에서의 적용 사례와 이에 대한 내각사무처의 역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부입법계획) 대한민국에서는 법제처에서 매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의 시기 및 개수 등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의 제·개정 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내각사무처에서는 이러한 정부입법계획과 부처 간
이전 조정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그 외 처장님 말씀

- 지난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한 당시 처장님 방문 관련 말씀 등
언급하시며 자연스러운 대화

□ 마무리 말씀

- 작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후, 프랑스에 다
시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제처 방문단을 환대해 주
신 마크 기욤 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각사무처의 업
무에 대해 많이 파악하여 상호 교류가 추진되길 기원합니다.

프랑스 콩세이데따 부원장 면담 말씀자료

□ 인사말씀

- 바쁘신 중에도 법제처 방문단을 환영해 주신 콩세이데따 부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먼저 저희 방문단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김형수 기획조정관(국장급, Director General)입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김남연 법제교류협력담당관(과장급, Director)입니다.
- 지난 6월,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 크리스틴 모규에 (Christine Maugué) 제7재판부장이 참석하였고, 오찬을 함께 하며 콩세이데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콩세이데따를 직접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곳 콩세이데따는 팔레 루아얄 건물로 매우 유서가 깊은 만큼 방문이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예전 궁전 건물을 콩세이데따가 사용 중)

□ 법제처 소개 및 법제교류사업

- 법제처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부입법 총괄)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입니다.
- (법제) 법제처는 행정부가 제출한 법령안을 사전에 심사하여 위헌·위법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현행 법령체계의 조화와 통일성을 유지하는 법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석) 또한, 법령의 의미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행정부 내의 최고 유권해석기관으로 법령의 의미를 해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해석 업무는 행정재판과는 다른 업무로, 행정부 내부에서의 최종 해석이며, 행정재판은 사법부에서 담당합니다.

- (법령정보 및 시스템) 그리고, 법령의 심사 후 국무회의 상정과 확정된 법령의 법령정보시스템 등록 및 법령정보시스템 관리 업무 등 법령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법제 정비) 그 외에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령에 대해 법령 소관 부처에 정비를 권고하는 법령 정비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교류) 외국 법제기관들, 특히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을 전수하고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설치해 주는 등 외국과의 교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행정기본법제) 올해는 특별히 행정 분야 법령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Enactment of General Administrative Law)을 제정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원장 30분 면담 시간 상 법제처 소개 및 가벼운 인사말씀으로 면담 마무리 후 업무 관련 질의응답은 제7재판부장과 진행

□ 그 외 처장님 말씀

- 지난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한 당시 처장님 방문 관련 말씀 등 언급하시며 자연스러운 대화

□ 마무리 말씀

- 작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후, 프랑스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제처 방문단을 환대해 주신 부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향후 콩세이데따와 법제처 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원합니다.

프랑스 쁡세이데따 제7재판부장 면담 말씀자료

□ 인사말씀

- 지난 6월 방문 이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방문단 소개 상황에 따라 생략) 저희 방문단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김형수 기획조정관(국장급, Director General)입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김남연 법제교류협력담당관(과장급, Director)입니다.

□ 쁡세이데따 업무 언급 및 법제처 재소개

- 지난 번 발표와 쁡세이데따 업무 소개로 저와 법제처 직원들이 쁡세이데따에 관한 최신 소개 자료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법제처도 제가 취임한 이후 법제처의 업무 소개 자료를 최신화하여 영문으로 번역된 책자를 가져왔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업무 소개는 지난번에 진행하였으므로 생략)

□ 행정기본법제

- 법제처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기에 이번에는 최근 특별히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개별 행정법이 있습니다. 약 4천개 가량 됩니다. 이러한 개별 행정법들 중 분야별로 일반법에 해당하는 법률(국가배상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법 전체를 아우르는 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 분야별 일반법 등 법률 간의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용어가 통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 국민들이 특히 행정법을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제처가 정부 내 입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행정법 전체의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도 '블랑꼬 판결'을 통해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를 명확히 구별하는 등 쾅세이데따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불문법(不文法)의 역할을 하고, 행정부와 일반 국민과의 관계법(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행정절차법과 유사)이 201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쾅세이데따 측에서는 해당 법(code) 외에 추가로 행정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 의회자문 관련 질의응답

- 지난 번 페즈 판사의 소개로, 쾅세이데따가 수행하는 전통적인 법령안에 대한 자문 업무 외에, 2008년부터 의회 법률안에 대해서도 쾅세이데따에서 자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제처도 본래 업무인 정부입법에 대한 필수적인 심사 외에 국회발의법률안에 대해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을 모니터링 후 정부 부처에 알려주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정부 내부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처의 경우 법제 담당 부서와 국회에 대한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 쾅세이데따의 자문은 의회 내부의 자체적인 검토와 별개로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재판 기능과 자문(심사) 기능

- 행정재판기능과 자문(법제심사) 기능이 하나의 기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시너지가 되는 측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제처도 예전에 재판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대한민국은 행정재판도 사법부에서 관할합니다)을 수행하다가,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부처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법제처로 행정심판을 이관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정

- 법제처도 행정부 내에서 최고의 유권해석기관으로 법령의 해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쟁세이데따에 정부 부처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 자문 요청이 들어와 정부 부처 간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쟁세이데따는 부처 간 이견 조정과 협의를 위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시스템 관련 말씀

- 법제처는 법제처 내부의 문서 처리 및 외부 기관과의 문서 처리를 모두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쟁세이데따는 정부나 의회에서 자문을 하는 경우 해당 요청서류나 회신 등의 문서를 모두 시스템으로 처리하는지 등 전자정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별첨 4 기념품

내각사무처 및 공세이데따 면담 기념품(기관선물)



금제 관식 (가로 30cm)

*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과 왕비의 금제 장식

대사관 선물(문배주)



* 대사님 및 참사관 선물 제공

방문기관 실무자 선물



* 나전 문양 명함함